

중소벤처기업부령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기 관 명 (부 서 명)	중소벤처기업부 (기술창업과)
연 월 일	2020. 3. .

법 제 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·육성 사업의 운영자에 대하여 선정 취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 개정(법률 제16818호, 2019. 12. 10. 공포)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·육성 사업의 운영자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세부기준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4(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·육성사업 운영자의 선정 및 취소) ①
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사업 운영자를 선정할 수 있다.

1. 창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재원을 보유할 것
2. 제1호의 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결정권을 보유할 것
3. 창업자 보육 공간을 보유할 것
4. 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보육, 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할 것
5. 그 밖에 창업자를 발굴·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업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한 경우
2. 사업 운영자가 창업자로부터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

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정하는
사항에 해당하는 경우

부 칙

이 규칙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9조의4(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</u> <u>· 육성사업 운영자의 선정 및</u> <u>취소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</u> <u>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</u> <u>에서 사업 운영자를 선정할 수</u> <u>있다.</u> <u>1. 창업자에게 투자할 수 있는</u> <u>투자재원을 보유할 것</u> <u>2. 제1호의 투자재원에 대한 투</u> <u>자결정권을 보유할 것</u> <u>3. 창업자 보육 공간을 보유할</u> <u>것</u> <u>4. 창업자에 대한 교육 및 보육,</u> <u>해외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</u> <u>는 역량을 보유할 것</u> <u>5. 그 밖에 창업자를 발굴·육</u> <u>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</u> <u>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</u> <u>는 요건을 갖출 것</u> <u>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</u> <u>운영자가 다음 각호의 하나에</u> <u>해당하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</u> <u>다.</u> <u>1. 사업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</u>

	<u>으로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</u> <u>한 경우</u> <u>2. 사업 운영자가 창업자로부터</u> <u>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부당한</u> <u>요구를 한 경우</u> <u>3.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</u> <u>이 사업 운영에 부적합하다고</u> <u>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</u>
--	--